



경상북도



영천시



(주)퓨처모빌리티랩스



대구대학교



대구대학교

『퓨처 모빌리티 R&D 시티 조성』을 위한 업무협약서

경상북도, 영천시와 (주)퓨처모빌리티랩스, 대구대학교(이하 “각 기관”이라 한다)는 『퓨처 모빌리티 R&D 시티 조성』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,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각 기관 고유의 핵심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이동수단의 발전을 고려한 『퓨처 모빌리티 R&D 시티 조성』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

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.

1. 공통사항

- 가. 『퓨처 모빌리티 R&D 시티 조성』을 위한 상호협력
- 나. 각 기관 및 지역 상생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

2. 경상북도·영천시

- 가.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적극 지원
- 나. 인프라 조성 지원(영천시)

3. 대구대학교

- 가. 퓨처 모빌리티 R&D 시티 부지 마련
- 나. 교육 및 창업 지원
- 다. 산학협력 및 연구기관 집적화

4. (주)퓨처모빌리티랩스

- 가. 사업 전략 수립
- 나. 사업 재원 조달
- 다. 시설 인프라 조성
- 라. 시설 운영 및 관리

제3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1.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의 상호협의를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선정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
2.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방향을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

본 협약에 의해 취득한 각 기관의 업무상, 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.

제6조(효력)

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 전까지 당사자 상호간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은 각각의 역할 및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, 업무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및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0월 10일

경상북도지사

이철우

(주)퓨처모빌리티랩스
대표이사

이승훈

대구대학교 총장

김상호

영천시장

최기문







